

「서울특별시 서소구역의 입법·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(유지웅의원 대표발의)」 심사보고서

(의안번호 제473호)

◦ 2026.03.26.
◦ 운영위원회
위원장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6. 3. 13. 유지웅의원 외 6인(발의7, 찬성0)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6. 3. 16.
- 다. 상 정 일 자 : 2026. 3. 26.
- 라.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 : 제34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(1회 1일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유지웅 의원)

- 입법 및 법률 사안에 대한 자문을 위해,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·운영하고 있으나, 임기와 연임에 관한 통제장치가 미흡해 장기 연임에 따른 고착화 및 공정성 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. 이에, 고문의 임기 및 연임 제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,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.
- 아울러, 별지 서식을 포함한 일부 미비 사항을 정비해 행정의 실효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.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(보고자 : 전문위원 김성훈)

▣ 개정취지

- 본 개정조례안 입법·법률고문의 임기를 정하면서 연임 여부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장기 연임에 따른 고착화 및 공정성 저해가 우려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결과 개선 권고사항인 연임 규정을 명시하여 부패발생 소지를 차단하고,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약칭,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임.

▣ 주요 개정조례안 검토

- 안 제6조(임기)는 입법·법률고문의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, 현행 조문1)에서 “2년 임기, 재위촉할 수 있다”로 규정하고 있는 바,
 - 이는 연임과 관련해 통제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장기 연임에 따른 특정인과의 특혜 의혹, 친소관계에 따른 부패발생 소지, 다른 전문가의 위촉기회 제한 우려 등이 있음.
- 한편, 우리구 의회 입법·법률고문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연임 제한이 없어 재위촉이 이뤄지고 있고, 장기 연임 우려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.

구 분	A	B	C
위 촉 일 (최초)	2024.02.10. ※2026.02.10.재위촉	2024.03.16. ※2026.03.16.재위촉	2024.06.08.
임 기	2026.02.10.~ 2028.02.09.	2026.03.16.~ 2028.03.15.	2024.06.08.~ 2026.06.07.

1) 제6조(임기) 입법·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재위촉할 수 있다.

- 이에 따라, 안 제6조(임기) 연임 규정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부패발생 우려 해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사료됨.
- 그 밖에 안 제1조, 안 제2조의 약칭 사용, 안 제4조, 안 제5조의 띄어쓰기, 안 제9조의 제명의 문장부호 사용 등 전체 조문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되었음.

■ 종합검토

-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의 “입법·법률고문의 연임 제한 규정”을 명확히 함으로써 부패발생 우려 해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있다고 사료되고,
- 법제처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전체 조문에 대한 정비가 이뤄졌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토론사 및 토론요지 : 없음

6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(만장일치)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10. 체계사구정리내용 : 없음